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사유

구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상호간 분쟁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, 민원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분쟁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함

## 2. 관련법령

「주택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

## 3. 주요골자

가. 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분쟁위원회 효력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## 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최근의 주거환경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모되고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상호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, 분쟁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

과 효율성확보 차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

-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기본욕구에 부응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
  - 경남 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중구, 서구, 동구 등 9개구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여타 시·구·군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
  - 특히 「주택법」 등 관련법령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-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8. 2. 19

도시전문위원 정금배